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선 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고

-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268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2

공 람									
--------	--	--	--	--	--	--	--	--	--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4-268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관련법령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행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해당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내용

- 1)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조례명 변경 반영(안 제6조)
- 2) 상위법령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변경사항 반영(안 제14조제1항~제2항)

- 3) 위원의 위촉자 변경 : 도서관장 → 구청장(안 제14조제2항제1호)
- 4) 본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5조 삭제에 따라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신설(안 제14조제1항제1호~제7호,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제6항)

나.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

- 1)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한 규정 삭제(안 제20조~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도서관)에게 서면(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7번길 61 (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도서관)
- 전화번호 : 051) 607-6551 (Fax. 607-6559)

- 붙임 1.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련법령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행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해당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조례명 변경 반영(안 제6조)
- 나. 상위법령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변경사항 반영(안 제14조제1항~제2항)
- 다. 위원의 위촉자 변경 : 도서관장 → 구청장(안 제14조제2항제1호)
- 라. 본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5조 삭제에 따라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신설(안 제14조제1항제1호~제7호,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제6항)

4.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3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실시에정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예정

(5) 부패영향평가 : 평가예정

(6)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분관(이하 ‘도서관’이라한다)”을 “분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서관”을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이하 ‘도서관’이라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지역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자료의 수집, 보존 및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주민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제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부대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조(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5. ~ 7. (생략)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 7.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지역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련법령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해당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0조~제25조)

4.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3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실시예정
-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예정
- (4) 부패영향평가 : 평가예정
- (5)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
제5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조례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 ----- -----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4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삭제>
제22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삭제>

<p>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제24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p> <p>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5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시에는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관련 법령

▣ 도서관법

-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